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22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진선미

윤준병 • 정준호 • 김영배

이춘석 · 정동영 · 서미화

위성락 • 문대림 • 이원택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따라 1일 약 13만원 수준의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발생하고 있음.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

하도록 하여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약제는"을 "약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간병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간병
- 3. 제1항제8호의 간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한 간병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	제41조(요양급여) ①
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	
급여를 실시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간병</u>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	2
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	
(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	1
항제2호의 <u>약제는</u> 제외한다):	<u>약제 및 같은 항</u>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8호의 간병은
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1항제8호의 간병: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장
	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간병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